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847호 2023. 8. 3.(목)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23-1063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----- 1
- 사천시 공고 제2023-1069호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입법예고 ----- 2
- 사천시 공고 제2023-1070호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2
- 사천시 공고 제2023-1071호 청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
및 공고 ----- 2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##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

사천시 공고 제2023-1063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일

## 사 천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 자)	상호 및 명칭	주식회사 한국화학강화유리		
	대표자 (성 명)	사천시장	주소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
소하천명		신예원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사천읍 구암리 1811번지		
	면적	8.4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-
	기간	2023년 7월 26일부터 5년		
	목적 및 사유	배수시설 설치		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(건설과 비치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1069호

「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사용·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상위법령 조문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)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시장 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지역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지역경제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3063,

FAX: 831-6031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「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##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3 -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8. .

제 출 자: 지역경제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사용·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상위법령 조문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)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시장 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공보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3. 8. 3. ~ 2023. 8. 23.(20일 이상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장(市長)”을 “사천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설시장은 사천시장[이하 “시장(市長)”이라 한다]이 개설한다.

제5조제2항 단서 중 “시의”를 “사천시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하거나 시장(市長)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”를 “했을 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시장(市長)</u>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사천시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개설 및 시설기준) ① <u>공설시장</u>은 <u>시장(市長)</u>이 개설한다. 다만,임시시장의 개설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른다.</p> <p>② 삭 제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4조(개설 및 시설기준) ① <u>공설시장</u>은 <u>사천시장</u>[이하 “<u>시장(市長)</u>”이라 한다]이 개설한다. ----- ----- 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사용허가) ① (생 략)</p> <p>② 사용자 결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개추첨으로 <u>시장(市長)</u>이 정한다. 다만, <u>시의</u>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삭 제</p> <p>④ ~ ⑦ (생 략)</p>	<p>제5조(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--- <u>사천시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) ① <u>시장(市長)</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</p>	<p>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) ① ----- ----- -----</p>

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를 위반한 때
2. 사용허가,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3. 부정한 수단으로써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
4. 영업상 부정행위를 시장(市長)이 인정한 때
5.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장(市長)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
6.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
7. (생략)
8.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
9.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한 때
10.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
11. 그 밖에 시장(市長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<신 설>

② (생략)
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5. ----- 했을  
경우

<삭 제>

7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12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 
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
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5조(사용허가의 취소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개정 2021. 4. 20.>

1.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5.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개정 2021. 4. 20.>

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<개정 2021. 4. 20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 제3항단서에 따라

이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·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8조(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)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 1. 5., 2022. 4. 20.>

1.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
2.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
3.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·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

②(생략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1070호

「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인감증명서를 갈음한 본인서명사실확인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,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때 제출 서류개정(안제16조제2호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지역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지역경제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3063, FAX: 831-6031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「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##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23 - 제 호
--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8. .

제 출 자: 지역경제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인감증명서를 갈음한 본인서명사실확인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때 제출 서류 개정(안제16조제2호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의2제3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공보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3. 8. 3 . ~ 2023. 8. 23.(20일 이상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시 전통시장”을 “사천시 전통시장”으로, “시장(市長)”을 “사천시장 [이하 “시장(市長)”이라 한다]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제2항 중 “시 홈페이지”를 “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16조제2호 중 “인감증명서 또는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시장의 구역) <u>시</u> 전통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구역은 <u>시장(市長)</u>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.</p> <p>제2조의2(시장의 인정취소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(市長)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<u>시 홈페이지</u>에 게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6조(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)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서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(市長)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제2조(시장의 구역) <u>사천시</u> 전통시장 ----- <u>사천</u> <u>시장</u>[이하 “시장(市長)”이라 한다]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의2(시장의 인정취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천시</u>(이하 “시”라 한다) <u>홈페이지</u>----- -----.</p> <p>제16조(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2.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 
인감증명서 또는 「본인서명사  
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  
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  
자본인서명확인서

2. -----  
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 
법률」 -----  
-----  
-----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38조의2(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) ① 토지 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意的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8.]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1071호

## 청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9조의3 및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『청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』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8. 3.

## 사 천 시 장

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: 재해예방사업(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)
- 나. 명 칭: 청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

### 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 명: 사천시장(재난안전과장)
- 나. 주 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### 3.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

- 가. 위치 및 면적: 사천시 대방동 765-3번지 일원(8,133㎡)
- 나. 사업규모: 우수저류조 18,000㎡, 우수저류지 3,000㎡, 고지배수로 472m 등

# 사 천 시 공 보

제847호

## 4.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예정일: 2023. 8.

나. 준공예정일: 2026. 12. 31.

## 5.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: 붙임참조

## 6. 열람기간 및 장소(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)

가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나. 열람장소: 사천시청 재난안전과

## 7.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

재난안전과(055-831-331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1]

## 도시관리계획[시설:우수지(저류시설, 방수설비(고지배수로))] 결정(변경) 고시내용 (청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)

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1.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

가. 우수지(저류시설) 및 방수설비(고지배수로)

■ 우수지(저류시설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②	우수지	저류시설	사천시 대방동 765-3번지	-	증)4,493	4,493	-	
신설	③	우수지	저류시설	사천시 서동 64번지	-	증)2,149	2,149	-	

■ 방수설비(고지배수로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		연장 (k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
신설	①	방수설비	고지배수로	사천시 서동 373-1	사천시 대방동 765-25	-	0.38	893	-	

나. 시설 결정 사유서

■ 우수지(저류시설) 시설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②	우수지 (저류시설)	• 저류시설 신설 - A=4,493㎡	•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[우수지(저류시설)] 결정하고자 함
③	우수지 (저류시설)	• 저류시설 신설 - A=2,149㎡	

■ 방수설비(고지배수로) 시설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①	방수설비 (고지배수로)	• 고지배수로 신설 - A=893㎡	•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([방수설비(고지배수로)] 결정하고자 함



[붙임2]

# 도시관리계획[시설:우수지(저류시설, 방수설비(고지배수로))] 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 (청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)

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사천시 서동 373-1번지 ~ 대방동 765-25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[우수지(저류시설), 방수설비(고지배수로)]사업

나. 명 칭: 청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

3. 면적 또는 규모: 저류시설 A=6,642m<sup>2</sup>, 배수로 A=893m<sup>2</sup>, 기타관로 A=598m<sup>2</sup>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사천시장(재난안전과장)

나. 주 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5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가. 착 수 일: 실시계획 인가일

나. 준공예정일: 2025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※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·공고에 따른 토지조서 참조

[붙임 3]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사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공부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	계	31필지		45,374	8,133						
1	서동	64	전	843	635	박*진	경남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4번길 **	하*득	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43번길**, **(괘법동 그랑드원)	가압류 근저당권	
								새남해새마을 금고	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**(아산리)	가압류	
								창원신용협동 조합	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9번길 **~**도계동)	근저당권 지상권	
								수영세무서장		근저당권부채권 압류	
								신한카드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***, 에이동(을지로2가, 파인에비뉴)	근저당권부채권 압류	
								이*원	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다길 **, ***호(내발산동)	근저당권부채권 압류	
								이*삼	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960번길 **~*	근저당권	
2	서동	65	전	1,289	1,184	박*주	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****(고현동)	하*득	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43번길**, **(괘법동 그랑드원)	가압류 권저당권	
								창원신용협동 조합	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9번길 **~**도계동)	근저당권 지상권	
								수영세무서장		근저당권부채권 압류	
								신한카드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***, 에이동(을지로2가, 파인에비뉴)	근저당권부채권 압류	
								이*원	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다길 **, ***호(내발산동)	근저당권부채권 압류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공부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3	서동	64-1	도	86	43	사천시	.				
4	서동	65-1	도	86	34	사천시	.				
5	서동	66	전	136	136	박*진	경남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4번길 **	하*득	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43번길**, **(괘법동 그랑드윈)	가압류 근저당권	
								새남해새마을 금고	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**(아산리)	가압류	
								창원신용협동 조합	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9번길 **~**도계동)	근저당권 지상권	
								수영세무서장		근저당권부채권 압류	
								신한카드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***, 에이동(을지로2가, 파인에비뉴)	근저당권부채권 압류	
								이*원	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다길 **, ***호(내발산동)	근저당권부채권 압류	
								이*삼	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960번길 **~*	근저당권	
6	서동	67	전	80	79	사천시	.				
7	서동	67-3	전	143	39	사천시	.				
8	서동	66-2	도	137	12	사천시	.				
9	서동	65-2	도	30	6	사천시	.				
10	대방동	750	구	3,831	11	국(국토교통부)	.				
11	대방동	161-3	도	33	1	곽*곤	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***				
12	대방동	161-12	대	33	1	사천시	.				
13	대방동	161-16	전	23	4	사천시	.				
14	서동	373	구	305	10	국(국토교통부)	.				
15	서동	373-1	구	51	13	국(국토교통부)	.			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공부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6	대방동	161-13	전	86	10	문*관	경남 용현면 신진리 **-*				
17	서동	178-5	도	888	69	국(국토교통부)					
18	서동	178-140	도	524	86	국(국토교통부)					
19	대방동	766	구	1,586	231	국(국토교통부)					
20	대방동	765-3	대	12,608	5,223	사천시					
21	대방동	765-23	대	210	4	사천시					
22	대방동	765-15	대	3,039	119	사천시					
23	대방동	765-25	도	470	22	사천시					
24	대방동	763	도	2,480	14	국(국토교통부)					
25	대방동	765-11	도	209	18	사천시					
26	동동	487	구	3,957	4	국(국토교통부)					
27	동동	15-1	대	54	8	사천시					
28	서동	31	도	5,818	11	사천시					
29	서동	176-27	도	4,085	101	사천시					
30	서동	178-141	도	875	3	국(국토교통부)					
31	서동	372	도	1,379	2	국(국토교통부)					